

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경북 5G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5G 테스트베드의 성과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단계
에서부터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구미·경북 지역에 특화된 상용화
가능한 5G 융합제품·서비스·시스템(시범실증분야) 개발 지원
- 나. 5G 융합산업의 기술진화 단계와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한
경북 산업·사회환경을 고려한 유망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중소
기업의 5G 新시장 진출 지원 및 제품 경쟁력 확보
- 다. 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
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
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출연금액 : 10억원(도비 3, 시비 7)
- (3) 사업내용 : 경북 최적의 산업·사회 환경을 활용, 지역 특화된
상용화 가능한 5G 융합제품·서비스 기술개발 및 기업 투자지원

(4) 출연근거

○ 법 령

지방재정법(제18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
○ 조 례

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나. 주요 사업

(1) 사 업 명 :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

(2) 사업기간 : 2020. 1월 ~ 2023. 6월(3년 6개월)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
(4) 총사업비 : 30억원 [도비 9, 시비 21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
		'20년	'21년	'22년
계	30	7	13	10
도 비	9	2	4	3
시 비	21	5	9	7

(5) 추진주체 :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추진방법 : 참여기관(기업) 공개모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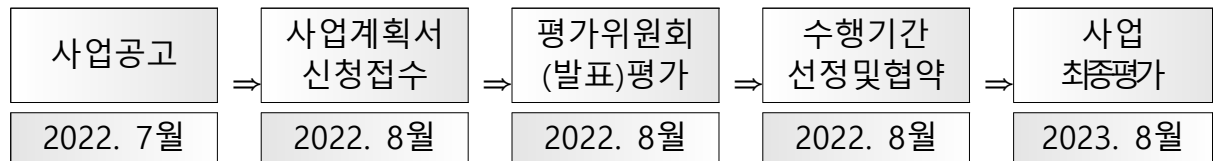
(7) 추진대상 : 경북지역 소재 중소·중견기업(본사·공장 등)

(8) 전담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9) 사업내용 : 경북 지역특화 5G 상용기술개발 과제 기업지원

- (1단계) 초기 5G 융합기술 초고속(대용량) 디바이스·서비스

- (2단계) 기술적 성숙단계 5G 저지연·초연결 디바이스·서비스
- (3단계) 5G 융합기술 확산단계의 융합 디바이스·서비스
- (4단계) 기업 성과 제고, 기업매출 및 사업화 실적 제고



〈 추진일정 및 평가절차 〉

《 경북 5G 상용기술개발 과제 분야 》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5G 융합 생산공정 혁신기술개발 | • 사회·자연재난 대응 공공안전 서비스 |
| • 효율적인 물류·운송 시스템 개선 | • 신개념 교육용 디바이스 및 콘텐츠 |
| • 5G 커넥티드 초물입 가상관광서비스 | • 농작물 재배관련 정보수집·활용 |
| • 미디어 사용자 체감품질 향상 기술 | • 농작물 재배환경 원격조작 및 자동화 |
| • 질병예방·관리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 | • 농작물 전자상거래 서비스·플랫폼 |

(10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9. 8. : 연구개발 분야 및 사업계획 수립
- 2020. 1. : 사업설명회
- 2020. 2. : 사업공고 및 기업과제 신청접수(17개)
- 2020. 4. : 5G 상용기술 과제 온라인(화상) 발표 평가
- 2020. 5. : 수행기관(기업) 선정 및 협약·과제개발 추진

※ 디바이스 분야 : 3개, 3개社/ 서비스 분야 : 3개, 3개社 선정

(구미 5개社, 포항 1개社)

- 2020. 9. : 5G 상용기술 과제 중간평가회 개최
- 2021. 1.~3. : 연차평가(1월, 서비스분야), 최종평가(3월, 디바이스 분야)
- 2021. 10. : 2차년도 사업공고

- 2021. 12. : 2차년도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·과제개발 추진
- 2022. 7. : 2차년도 연차평가
- 2022. 7. : 3차년도 사업공고
- 2022. 8. : 3차년도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·과제개발 추진
- 2023. 8. : 사업최종평가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5G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, 초기시장 신규 수요 불분명으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5G 관련 기술 개발 분야에 재원 투입이 어려운 실정
- (2) 5G 융합산업 지역 우위권 확보를 위해, 공공부문 적극적 투자 지원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투자 필요
- (3) 5G 융합산업 기업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하고,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생태계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체적인 사업화를 통한 자립화 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신성장산업과
입 안 자	과 장	박노돈
	담 당	전명성
	담 당 자	김충현 (480-6162)